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제118조제2항 중 “최근 3개월”을 “6개월”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 2.5센티미터×3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첩형 면허증은 별지 제102호서식, 상장형 면허증은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사람: 수첩형 면허증은 별지 제103호서식, 상장형 면허증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

제1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제14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신청서 및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제101호서식, 제102호서식, 별지 제102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의2서식,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응시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u>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3센티미 터×4센티미터) 1매</u>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16조(응시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u>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자격 심사결과 적합 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u>최 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 반신의 증명사진, 2.5센티미터×3 센티미터</u>)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u>제출</u>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 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u>)- ---- <u>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 면허수첩을,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면허수첩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첩형 면허증은 별지 제102호
서식, 상장형 면허증은 별지 제
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
호까지의 면허시험 중 어느 하
나에 합격한 사람: 수첩형 면허
증은 별지 제103호서식, 상장형
면허증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

제119조(면허증의 재발급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진(<u>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증명사진, 2.5센티미터×3센티미터</u>) 1매 3. (생 략)	제119조(면허증의 재발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사진(<u>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u>) 1매 3. (현행과 같음)
제142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24. (생 략) 25. 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u>발급신청서</u> 26. ~ 29. (생 략)	제142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 ----- ----- -----. 1. ~ 24. (현행과 같음) 25. ----- <u>발급신청서 및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서</u> 26. ~ 29. (현행과 같음)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 응시번호	
①면허종류		②노형 및 용량급		사진 3.5cm×4.5cm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근무처		⑦전화			
⑧선택과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에 한함)				
교육수료사항	⑨과정명		⑩수료연월일		
면허·자격 소지사항	⑪종류		⑫번호 및 발행 연월일		
시험면제	⑬근거		⑮※ 확인	⑰인	
	⑭신청과목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면허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면허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계인)

<절취선>

응시표				※ 응시번호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면허종류		노형 및 용량급			
선택과목		성명			
※ 시험면제 확인		⑰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①응시표 ②신분증 ③흑색 또는 청색 볼펜 ④계산기 ⑤컴퓨터싸인펜(OMR답안지 작성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응시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 기재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예정일	
	ARS번호 및 인터넷주소	

[illegible]

원자력관계면허증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부서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류		
	노형 및 용량급		

면허증 서식 선택 (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 또는 제103호 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 또는 제103호의2 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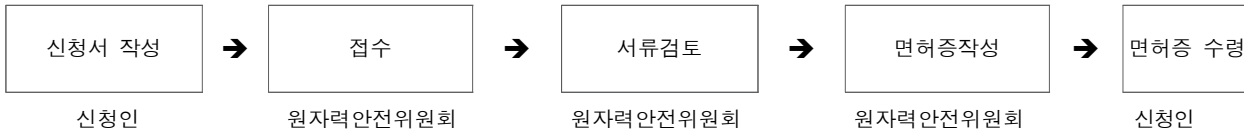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증
원자로조종사



원자력안전위원회

80mm×130mm[백상지 150g/㎡]

주의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자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2. 이 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제 호

면허증

면허종류 :
공급자 :
노형 및 용량급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사진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취득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No.

Certificate of License

Type of License :
Supplier :
Type and Capacity of Reactor :
Name :
Date of birth :
Address :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1) of the Act and Article 118 of the Regulation

Date of Acquisition :
Date of Issue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직인

-4-

기간	교육이수과정명	확인

-5-

기간	교육이수과정명	확인

-6-

기간	신상변동사항	확인

-7-

기간	신상변동사항	확인

제 호 / No.

면허증 (Certificate of License)

사진
(3.5cm×4.5cm)

- 면허종류(Type of License):
- 공급자(Supplier):
- 노형 및 용량급(Type and Capacity of Reactor):
-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주소(Address):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This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1) of the Act and Article 118 of the Regulation.]

취득(Date of acquisition)

년

월

일

발행(Date of Issue)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주의사항(Notes)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는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by illegitimate means,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or exercised illegally.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 이 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교육 이수(Education)

기 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Education coursed completed)	확인 (Checked)

신상 변동(Personal Identity)

기 간 (Period)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표지)

핵 연 료 물 질 취 급 감 독 자
핵 연 료 물 질 취 급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면허증



원자력안전위원회

80mm×130mm[백상지 150g/㎡]

-1-

주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자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 이 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2-

제 호

면 허 증

면허종류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사진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취득
발행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3-

No.

Certificate of License

Type of License :

Name :

Date of birth :

Address :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1) of the Act and Article 118 of the Regulation

Date of Acquisition:

Date of Issu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직인

제 호 / No.

면 허 증 (Certificate of License)

사진
(3.5cm×4.5cm)

1. 면허종류(Type of License):
2. 성명(Name):
3. 생년월일(Date of Birth):
4. 주소(Adress):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This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1) of the Act and Article 118 of the Regulation.]

취득(Date of acquisition)

년

월

일

발행(Date of Issue)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주의사항(Notes)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는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license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obtained by illegitimate means,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or exercised illegally.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 이 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교육 이수(Education)

기 간 (Period)	교육이수과정명 (Education coursed completed)	확인 (Checked)

신상 변동(Personal Identity)

기 간 (Period)	신상변동사항 (Changes in personal identity data)	확인 (Checked)

원자력관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소	(전화번호 :)		
	근무처	부서 및 직위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노형 및 용량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면허증 서식 선택(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 또는 제103호 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 또는 제103호의2 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